

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

-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-

2018. 3. 8.

관계부처 합동

순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배경 및 경과 | 1 |
| II. '17년 아동학대 현황 및 특징 | 2 |
| III. 최근 문제화된 아동학대 사건의 시사점 ... | 4 |
| IV. 보완대책 | 6 |
| V. 향후 추진계획 | 13 |
| 붙임 1.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과제 | 15 |
| 붙임 2.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 | 16 |
| 붙임 3.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및 국민인식 조사결과 ... | 18 |

□ 추진배경

- 최근 미취학 아동학대 사망 사건*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그간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재점검 및 보완 필요성 제기
 - * 고준희(5세, 여) 학대치사 및 은폐사건, 방임·화재로 사망한 광주 삼남매사건 등
- 대통령, ‘아동학대 대책 점검 및 실효성 제고’ 지시(1.8, 수보회의) 및 ‘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’ 발표(1.10, 신년사)
- 국무총리, ‘영유아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 정비, 기존 대책 점검 및 보완,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마련’ 등 지시(1.9, 국무회의)
-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, 위기 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등의 세부 실행계획 마련 필요

□ 추진경과

- ‘14.2월,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(‘13.10)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*을 최초로 마련
 - * △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제정 △ 신고체계 112로 통합 △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지침 시행 △ 신고의무자 신고활성화 방안 마련 등
- ‘15년, 아동학대 대응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관련예산을 기금(범죄피해자보호기금, 복권기금)으로 편성
- ‘15년말 아동학대 중대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‘16.3월,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·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* 마련
 - * △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△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△ 미취학·장기결석 아동 및 건강검진 등 미 실시 영유아 일제 점검 △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등 인프라 확충 등 34개 과제
- 아동학대 조기발견 강화 및 아동복지시설 내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2차에 걸쳐 보완대책 추가 마련(‘16.9, ‘17.2)

Ⅱ '17년 아동학대 현황 및 특징

◆ 범정부 종합대책 추진 및 국민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'아동학대는 범죄다'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, 여전히 가정 내 학대 미발견 등 사각지대 존재

□ 매년 완만하게 상승 중인 아동학대 발견율

- 국민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·판단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나, 여전히 OECD 주요국에 비해 아동학대 발견율이 낮은 실정
 - (신고·판단건수) '17년 신고건수는 34,221건으로 전년대비 15.3% 증가, 판단건수는 21,524건으로 전년대비 15.1% 증가
 - (아동학대 발견율*) '17년 2.51‰로 전년대비 0.36‰p 상승하였으나, OECD 주요국 발견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

* 아동인구 1,000명당 아동학대 판단건수



□ 아동학대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발생

- '17년 아동학대 가해자* 10명 중 7.7명은 부모이며, 특히 재학대 사례의 경우 95.5%가 부모에 의해 발생

* 가해자 유형 : 부모(77.2%), 대리양육자(14.2%), 친인척(4.8%), 기타(3.8%)

- 아동학대의 가장 큰 동기*는 양육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

* 양육방법 이해부족(36.2%), 사회·경제적 스트레스(18.8%), 부부갈등(9.7%) 등

□ 미취학 아동은 중대학대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

- '17년 학대 피해아동 중 만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19.9%(4,282건)이나, 학대 사망아동 중에서는 전체의 80.6%(25명) 차지

< '17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 현황 >

| 연령 | 계 | 0세 | 1세 | 2세 | 3세 | 4세 | 5세 | 6세 | 7세 | 8세 | 9세 | 12세 |
|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
| 사망자 수 | 31 | 12 | 2 | 3 | 3 | 2 | 3 | 1 | 2 | 1 | 1 | 1 |

□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('17.11월, 소셜 빅데이터 분석)

- 아동학대를 '가족간의 문제'에서 '사회문제'로 인식하는 경향 강화, 신체학대 외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증대
- 기존에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않던 정서학대·방임 및 아동훈육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문제의식 지속 강화

<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아동학대 인식조사 >



□ 적정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주저하는 사회 분위기는 여전('17.9월, 국민인식 조사)

- 응답자 대다수(85.2%)가 '훈육과정에서 처벌이 필요하다'고 답변
- 아동학대 의심에도 불구하고 '남의 가정문제(42.5%)', '학대행위자에 의한 보복 우려(35%)', '신고방법 부지(32.5%)' 등으로 신고 기피

< 사전예방 >

- 시흥 11개월 영아 사망 사건 : 친부와 친모(미성년 출산자)가 평소 생활고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녀(총 3명)를 구타, 의료·양육방임 등 지속적으로 학대하였으며, 피해아동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친부가 폭행해 사망
-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 : 친부는 PC방에, 친모는 음주를 위해 3남매를 장시간 방임 후 친모가 만취상태에서 화재를 일으켜 3남매 모두 사망

- (문제점) 양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면서 정작 교육이 절실한 취약·위기가정 부모, 아동 등은 소외
- (보완방향)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, 아동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의 제도화를 통한 사전예방체계 강화

< 조기발견 >

- 전주 5세 여아 실종·사망 사건 : 어린이집에서 퇴소한 5세 미취학 아동이 친부로부터 학대를 받고 사망하였으나, 약 8개월간 관련 사실 발견 실패
- 대구 3세 남아 사망 사건 : 친부가 애견용 목줄로 만 3세 미취학 아동을 침대에 묶고 구타하는 등의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였으나 관련 사실 발견 실패

- (문제점) 국가·지자체·신고의무자 등 1차 발견체계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접촉 기회가 거의 없는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가정 내 학대는 감시 사각지대도 존재
- (보완방향) 신고 없이도 위기가정을 사전에 예측해 적극적인 가정 방문·안전확인 추진,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·감시체계 강화

< 신속대응·보호 >

- 목포 5세 남아 실명 사건 : 학대의심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친모 교제남의 진술에만 의존해 별도 조치 없이 일반사례로 판정하였으나, 2달 뒤 지속적인 학대 후유증으로 아동의 안구적출
-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폭행 사건 : 상담원이 피해아동을 분리조치하는 과정에서 학대 행위자인 친부가 담뱃불로 위협해 상담원 화상 진단

- (문제점) 주요 선진국*과 달리 민간위탁** 중심의 아동보호체제로 공공성·책임성·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

* 미·영·일, 신고접수·현장조사·보호조치는 지방(주)정부에서 직접 수행

** 현재 61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58개가 민간위탁 운영(서울2, 부산1 직영) 중, 사건조사 시 민간인 신분 상의 한계로 학대행위자의 협조 거부 빈번

- (보완방향)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적정 인프라 확보,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안정적 신분 보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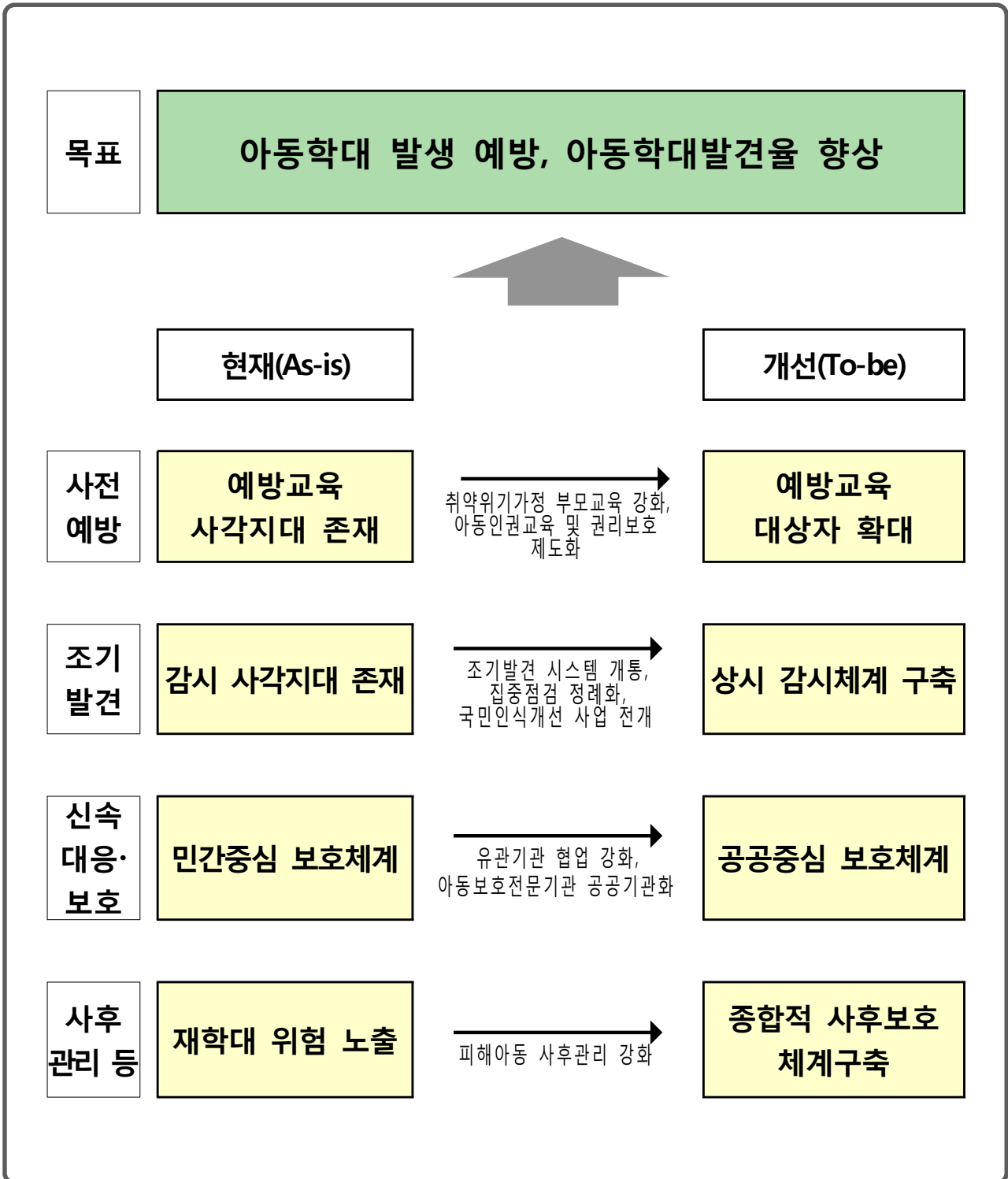
< 사후관리 >

- 서울 13세·11세 아동 재학대 사건 : 상습적인 아동학대 행위자인 계부가 의붓자식들을 폭행하고 바퀴벌레를 먹이는 등 지속적으로 재학대하여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

- (문제점)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및 아동학대행위자가 형기 만료 등으로 가정에 복귀하는 경우,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체계적인 관리·보호 미흡으로 재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
- (보완방향)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·협업 강화 및 보호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지자체 중심의 종합적 사후보호 플랜 마련

◆ 국정과제* 추진방향 및 최근 학대사건 분석결과에 따라,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둔 보완대책 마련

* 국정과제 48-5: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



1. 사전 예방 : 부모교육 및 아동인권보호 강화

□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인프라 강화

○ 영유아 보육 부모 대상 부모교육 확대

- (예방·신고 교육) 영·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시 온·오프라인* 아동학대 예방·신고 교육 강화('18.6월~)

* 아동수당·양육수당·보육료·유아학비 신청 시 교육자료 게시·배포

○ 취약·위기가정 부모 대상 부모교육 강화

- (취약가정) 생계곤란·장애 등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부모에게 1:1 맞춤형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가족행복드림서비스* 확대

* (현행) '16년 86가구, '17년 369가구 제공 → (확대) '18년 400가구 제공

- (이혼위기 가정) 이혼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 추진('18.하반기)

○ 부모교육 등 인프라 강화

- (부모교육 매뉴얼 보급)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생애주기별·가족특성별 부모교육 매뉴얼* 온·오프라인 배포('18.3월~)

* '17.12월, 총 12권(PPT 62편, 동영상 13편 포함)의 종합 매뉴얼 개발 완료

- (전문강사 활용도 제고) 부모교육 전문강사('17년, 216명 양성) 온라인 검색 서비스('18.2월~)를 통한 맞춤형 전문교육 확대

□ 아동의 인권 보호 및 권리보장의 제도화

○ 성장기 인권·안전·법교육 강화

- (인권교육 콘텐츠 보급) 성장과정에서 아동이 자연스럽게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본권 관련 교육 콘텐츠* 개발(~'18.12월)

* 법교과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동인권교육 사례 등 포함

- (아동 안전교육 강화)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령별 맞춤형 안전교육* 실시('18.3월~)

* 신설된 '안전한 생활', '안전 단원' 교과 담당교원 연수 등을 통해 정기적 추진

- (아동학대 법교육 확대)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대상으로 법교육 전문강사의 현장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제도 강연 확대*

* (현행) '17년 약 30만명 대상 제공 → (확대) '18년 35만명 대상 제공 목표

○ 이혼소송 등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강화

- (진술청취 의무화 등) 아동의 복리와 관련된 재판에서 아동의 진술청취 의무화 및 절차보조인* 제도 신설 추진('18.하반기)

* 재판부가 선임하는 변호사 자격자 및 심리학·교육학 등 전문가로서 아동의 의사 및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가정법원에 보고·진술

- (가사조사관 업무 보강) 양육적합성 검사를 위해 가사조사관의 업무에 사실조사 외에 '필요한 검사' 추가 추진('18.하반기)

□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

○ 아동학대처벌특별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신고 의무자를 공익신고자로서 적극 보호* 추진('18.하반기)

* 비밀보장, 신변보호조치, 인사조치 우선고려, 불이익조치 금지, 책임감면 등

○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처벌 내용을 신고의무자 교육('18.4월~)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*('19.1월~) 내용에 포함해 국민 인식 제고

*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학교, 공직유관단체 대상 의무교육 실시

2. 조기발견 : 과학적 접근 강화

□ 위기아동을 조기발견·지원하는 아동행복지원사업 실시

-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보호 필요 아동을 조기발견·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통('18.3.19.)
 - (방문확인) 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으로 예측될 시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방문해 복지수요 파악 및 양육상담 실시
 - (사례관리) 복지서비스 필요 시 맞춤형 서비스* 연계,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·경찰 동행 현장조사 추진
- * 시군구 드림스타트, 희망복지지원단, 읍면동 맞춤형복지, 지역아동센터 등
- 지원이 필요한 아동 예측에 사용되는 통계(분석)모델 고도화 및 신규정보 추가 연계로 사각지대 최소화('18.6월~)
 - (미취학 아동 관련 정보 보강) 미취학 아동학대 사건 집중분석을 통해 미취학 아동의 가정 내 학대 관련 정보* 지속 발굴·연계
- * 예시 : 치료가 중단된 만성질환 아동 발굴을 위한 진료기록 등

< 참고 : 현재 연계된 미취학 아동 관련 주요정보 >

- ①어린이집·유치원 장기결석 ②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③예방접종 미실시
- ④양육수당·보육료 미신청 ⑤기존 아동학대 신고·조사 전력 등

□ 아동학대 점검 및 아동 소재·안전 확인 정례화

- 유관기관 합동*으로 매년 '아동학대 근절 집중 추진기간'을 운영해 보육시설 집중점검, 재학대 위기아동 모니터링('18.11월)
 - * 경찰청, 복지부, 아동보호전문기관, 지자체
- 예비소집 등 취학 전 단계부터 아동의 소재·안전을 지속 추적·관리, 학교 요청에 따른 경찰 수사 강화 추진(~'18.12월)

- 생활 속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지역 감시망 구축 및 인식개선
 -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조기발견·신고를 통해 생활 속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망 구축
 - 자치단체 읍면동별 이·통반장, 주민자치위원회, 아파트 관리사무소, 민간단체(녹색어머니 등) 등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활동 강화('18.7월~)
 - 다양한 매체(공익광고, 기획방송, 생활접점매체 등)를 통한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로 “체벌=학대”라는 인식 지속 확산('18.3월~)
 - 연령, 직업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콘텐츠 개발
 - 아동학대 신고번호(112) 전파를 위한 공모전 실시 및 모바일 신고 앱(아이지킴콜 112) 보급 확산

3. 신속대응·보호 : 공공성·전문성 제고

- 아동학대사건 수사 강화
 - 수사정보 공유 및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확충, 인센티브 확대
 - (수사정보 공유) 아동학대 사건 개입 단계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수사·지원 정보* 수시공유('18.5월~)
 - * 아동학대행위자 및 피해자 신상정보, 아동 피해상황, 당사자 진술내용, 처분결과 등
 - (시스템 연계) 학대예방경찰관 업무시스템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아동학대 관련 정보 간편 공유('19.상반기)
 - (인력 확충)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확충*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경찰-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출동을 제고 추진('19.상반기)
 - * (인력 증원현황) '16년 138명 → '17년 200명(+62명) → '18년 318명(+118명)
 - (수사경찰관 인센티브 확대) 적극적인 아동학대 사건 수사 독려를 위해 아동학대 수사 유공자에게 표창·특진 등 확대('18.상반기)

○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통한 수사체계 전문성 강화

- (전담검사 지속배치)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지속배치*해 영장청구·형사처분·피해자지원 등 전 과정 책임수사

* '18.1월 기준 전국 59개 검찰청에 총 103명 배치 운영 중

- (엄정한 법 적용) 아동학대범죄 관련 강화('16.11)된 사건처리기준* 및 중대학대사건 가중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('18.3월~)

* 피해아동 사망 시 고의·과실 불문 구속,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 구형 등

□ 피해아동 의료·법률서비스 적극 지원

- 피해아동 내원 시 응급의료센터와 정신과 전문의가 공동 대응해 신속하게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제공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·운영*('18.4월~)

* '18.4월,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병원(54개)을 우선 지정해 시범운영하고, '19년 상반기까지 226개 지자체별 최소 1개소씩 확대 지정·운영

-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과 권리구제 능력을 고려해 민사·가사소송 관련 법률상담, 소송대리 및 변호 등 각종 법률적 조력을 적극 지원*하고 국가가 비용 부담('18.4월~)

*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MOU 체결 등을 통해 추진

□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

-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 강화

- (공공기관 수행) 민간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수행*토록 함으로써 아동보호 업무의 공공성·책임성 대폭 강화(~'18.12월)

* 정부·지자체·민간 협의, 공공기관·민간 역할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'18년 말까지 구체적인 형태를 결정하고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

- (조사 등 대응역량 강화)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도·교육 권한 강화를 통해 대응역량 강화('19.1월~)

○ 아동학대 관련 국가·지자체 책무 강화

- 아동학대 근절 관련 범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‘(가칭)아동학대점검단’ 설치 검토*(’18.4월~)

* 아동학대 대책 관련 추진체계의 적정성, 업무량 추이 등을 종합적 분석 후 구체적인 구성안 마련

- (조기발견) 읍면동 공무원이 관할 내 가정방문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 적극 발굴 및 안전 확인 실시(’18.3월~)

- (복지지원) 시군구 드림스타트·희망복지지원단 및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연계, 읍면동 사례관리 등 지원 역할 강화(’18.3월~)

□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

- ’19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*을 6개소 및 학대피해아동쉼터**를 14개소 확충하고, 지역별 아동분포·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속 확대

* ’18.3월 현재 아보전 61개소 운영 중 / ** ’18.3월 현재 쉼터 59개소 운영 중

4. 사후관리 : 재학대 방지

□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 보호 강화

-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 사후보호 플랜 마련

- (사례전문위원회 정기 운영) 경찰·아보전·지자체·법조인·의료인이 포함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건 종료 후 분리 조치 지속 여부, 복지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 사후보호 플랜 마련(’18.4월~)

- 분리조치 후 가정복귀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

- (가정방문) 보호조치 종료로 가정에 복귀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가정방문해 필요한 지도·관리 제공(’18.3월~)

□ 재학대 방지 사후관리 강화

- 유관기관 간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공유
 - (구속·석방정보) 출소한 아동학대범죄자의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아동 변호사의 신청을 통해 검찰의 구속·석방 관련 정보를 변호사 및 피해아동에게 사전 통지('18.4월~)
 - ※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과정에서 해당 정보 확인 후 재학대 방지 관리
 - (조사·지원정보)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 조사내용·결과, 피해아동 지원내용 공유*('18.4월~)
 - * 지자체장, 판·검사, 경찰, 학교장, 전담의료기관의 장, 아동복지시설장 등
- 보호시설 퇴소아동 관리 강화
 - (퇴소 후 소재 확인) 퇴소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보호 중인 아동이 퇴소할 시 보호시설 장이 아동의 퇴소 후 거주지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의무 입력('18.6월~)
 - (주기적 모니터링) 원가정 복귀 후 6개월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가정방문 및 유선확인 등을 통해 재학대 발생여부 관리('18.6월~)

V

향후 추진계획

□ 보완대책별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

- '18.3월까지 「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」 과제[붙임1]에 대한 각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'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' 운영을 통해 과제 이행여부를 정기 점검
- 추진상황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, 사회관계장관회의,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에 수시 보고

□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

-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인프라 확장 지속 추진
 - '18년 말까지 아동학대 대책 전달체계 개편 관련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
 - '22년까지 매년 지역별 아동분포·접근성에 따른 인프라 확장 시급 지역 분석·선정
 - 국정과제(48-5번)에 따라 학대아동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추진
- '18.3월부터 매년 분기별 1회 아동행복지원사업을 실시하고, 가정 방문·상담 업무 신설에 따른 읍면동 현장인력 보강 추진

□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·관 협력체계 강화

- 사전예방, 조기발견, 신속대응 및 사례관리,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신고의무자 직군, 지역사회, 비영리법인, 관련 학회 등 민간과의 소통·협력을 강화하여 원활한 대책 추진 및 추가 과제 발굴

| 분 야 | 과 제 명 | 소 관 | 추진 일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사 전 예 방 (8) | ▣ 부모교육 강화 | | |
| | ① 영유아 보육 부모 대상 부모교육 확대 | 복지부 | '18.6월 ~ |
| | ② 취약가정 찾아가는 부모교육 확대 | 여가부 | '18.3월 ~ |
| | ③ 이혼위기 가정 부모교육 참여 | 법무부 | '18.하반기 |
| | ④ 부모교육 인프라 강화 | 여가부 | '18.3월 ~ |
| | ▣ 아동인권 및 권리보장 강화 | | |
| | ⑤ 성장기 인권·안전교육 강화 | 교육부 | '18.3월 ~ |
| | ⑥ 학생 대상 아동학대 법·제도교육 강화 | 법무부 | '18.3월 ~ |
| | ⑦ 이혼소송 등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강화 | 법무부 | '18.하반기 |
| | ▣ 신고의무자 보호 강화 | | |
| ⑧ 공익신고자 보호대상에 포함, 적극적 보호 | 권익위 | '18.하반기 | |
| 조 기 발 견 (6) | ▣ 조기발견시스템 구축·시행 | | |
| | ⑨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상시적 안전 확인 | 복지부 | '18.3월 ~ |
| | ⑩ 위험변수 지속 발굴 | 복지부 | '18.6월 ~ |
| | ▣ 지역네트워크 활용한 감시망 구축 | | |
| | ⑪ 지역사회자원, 민간단체 통한 감시망 구축 | 복지부·행안부 | '18.7월 ~ |
| | ⑫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홍보강화 | 복지부 | '18.3월 ~ |
| | ▣ 학령기 아동 소재·안전 확인 제도화 | | |
| ⑬ 아동학대 근절 집중 추진기간 운영 | 경찰청·복지부 | '18.11월 | |
| ⑭ 학교 요청에 따른 경찰 수사 강화 | 교육부·경찰청 | '18.3월 ~ | |
| 신 속 대 응· 보 호 (9) | ▣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| | |
| | ⑮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확충 | 기재부 | '19.상반기 |
| | ▣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| | |
| | ⑯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성 강화 | 기재부 | '18.3월 ~ |
| | ⑰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점검단 설치 검토 | 복지부·행안부 | '18.4월 ~ |
| | ▣ 아동학대사건 대응 및 협력체계 강화 | | |
| | ⑱ 아동학대사건 수사체계 전문성 강화 | 법무부 | '18.3월 ~ |
| | ⑲ 아동학대사건 업무협조 강화 | 경찰청 | '18.5월 ~ |
| | ⑳ 수사경찰관 인센티브 확대 | 경찰청 | '18.상반기 |
| | ㉑ 학대예방경찰관 인력확충 및 운영내실화 | 경찰청 | '19.상반기 |
| ▣ 피해아동 의료·법률서비스 지원 | | | |
| ㉒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·운영 | 복지부 | '18.4월 ~ | |
| ㉓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및 국가비용부담 | 복지부 | '18.4월 ~ | |
| 사 후 관 리 (4) | ▣ 학대 피해아동 보호·지원 | | |
| | ㉔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 사후보호플랜 마련 | 복지부 | '18.4월 ~ |
| | ㉕ 학대피해아동 주기적 관리 | 복지부 | '18.3월 ~ |
| | ▣ 재학대 방지 사후 관리 | | |
| | ㉖ 유관기관 간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정보공유 | 복지부 | '18.4월 ~ |
| ㉗ 보호시설 퇴소아동 관리 강화 | 복지부 | '18.6월 ~ | |

□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건수

(단위 : 건, %)

| 구분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전체 신고건수 | 10,943 | 13,076 | 17,791 | 19,214 | 29,674 | 34,221 |
| 최종 학대 판단건수 | 6,403 | 6,796 | 10,027 | 11,715 | 18,700 | 21,524 |
| 아동학대 증가율(%) | - | 6.14 | 47.54 | 16.83 | 59.62 | 15.10 |

□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

(단위 : 건, %)

| 구분 | 2013년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계 | 6,796(100) | 10,027(100) | 11,715(100) | 18,700(100) | 21,524 (100) |
| 부모 | 5,454(80.3) | 8,207(81.8) | 9,348(79.8) | 15,048(80.5) | 16,611 (77.2) |
| 친인척 | 351(5.2) | 559(5.6) | 562(4.8) | 795(4.3) | 1,033 (4.8) |
| 대 리 양 육 자 | 786(11.6) | 990(9.9) | 1431(12.2) | 2,173(11.6) | 3,054 (14.2) |
| (어린이집 교직원) | 202(3.0) | 295(2.9) | 427(3.6) | 587(3.1) | 776 (3.6) |
| (유치원 교직원) | 53(0.8) | 99(1.0) | 204(1.7) | 240(1.3) | 275 (1.3) |
| (초중고교 교직원) | 28(0.4) | 145(1.4) | 234(2.0) | 576(3.1) | 1,290 (6) |
| (학원·교습소 종사자) | 11(0.2) | 80(0.8) | 64(0.5) | 167(0.9) | 197 (0.9) |
| (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) | 389(5.7) | 206(2.1) | 324(2.8) | 283(1.5) | 246 (1.1) |
| (부모의 동거인) | 86(1.3) | 146(1.5) | 158(1.3) | 311(1.7) | 235 (1.1) |
| (위탁부모) | 13(0.2) | 12(0.1) | 13(0.1) | 5(0.0) | 20 (0.1) |
| (베이비시터) | 4(0.1) | 7(0.1) | 7(0.1) | 4(0.0) | 15 (0.1) |
| 타인 | 85(1.3) | 124(1.2)) | 187(1.6) | 201(1.1) | 352 (1.6) |
| 기타 | 85(1.3) | 129(1.3) | 166(1.4) | 454(2.4) | 429 (2) |
| 파악안됨 | 35(0.5) | 18(0.2) | 21(0.2) | 29(0.2) | 45 (0.2) |

□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

(단위 : 건)

| 구분 | 2013년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
|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합계 | 6,796 | 10,027 | 11,715 | 18,700 | 21,524 |
| 중복 | 2,922 | 4,814 | 5,347 | 8,980 | 10,947 |
| 신체 | 753 | 1,453 | 1,884 | 2,715 | 3,012 |
| 정서 | 1,101 | 1,582 | 2,046 | 3,588 | 4,360 |
| 성 | 242 | 308 | 428 | 493 | 626 |
| 방임 | 1,778 | 1,870 | 2,010 | 2,924 | 2,579 |

□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(2012~2017, 연도별)

(단위: 명)

| 구분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사망자 수 | 8 | 17 | 14 | 16 | 36 | 31 |

□ 재학대 발생 비율(2012~2017, 연도별)

| 구분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아동학대 판단 건수 | 6,403 | 6,796 | 10,027 | 11,715 | 18,700 | 21,524 |
| 재학대 건수(%) | 914 (14.3%) | 980 (14.4%) | 1,027 (10.2%) | 1,240 (10.6%) | 1,591 (8.5%) | 1,759 (8.17%) |

□ 아동학대 발견율(2014~2017, 연도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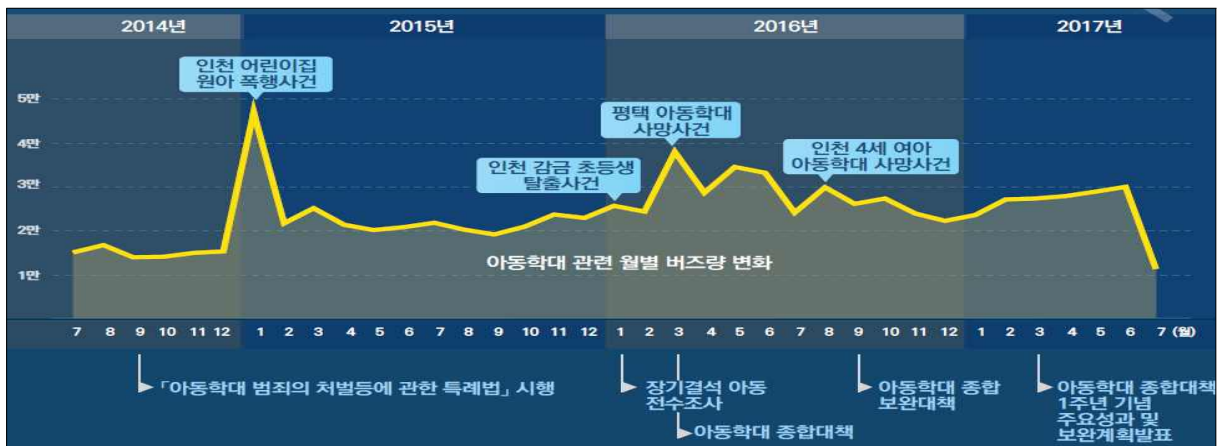
(단위: ‰)

| 구분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아동학대 발견율(‰) | 1.10 | 1.32 | 2.15 | 2.51 |

□ 최근 3년간('14.7~'17.6) 소셜미디어 상 아동학대 언급빈도 분석

- 온라인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언급빈도는 아동학대 신고추이 및 관련 사건 발생과 유사하게 증가하는 경향

< 참고 : 소셜미디어 상 아동학대 언급빈도 >



- “범죄”에 대한 언급빈도가 '15년 이후 급상승 → 아동학대가 “가족 간의 문제”에서 “사회문제(범죄)”로 인식되는 경향 반영

□ 아동학대 관련 인식조사 개요 및 결과

- (조사대상) 전국 20세 이상 국민 1천명(지역·성·연령 비례할당)
- (조사기간) '17.6.28 ~ '17.6.30

< 참고 : 조사내용 및 결과 >

| 조사내용 | 조사결과 |
|-------------------|---|
| 아동학대 담당기관 인지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대피해아동에게 도움을 줄만한 기관 인지율 33.6% - 여성(41.9%)이 남성(35.7%)보다 높은 인지율 |
|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경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고번호(112등) 인지율은 17.7%에 불과 • 신고경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.3% |
| 신고시 애로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밀보장 미흡(58.3%), 신고 후 조사과정 부담(41.7%), 업무량 증가(33.3%) 등 순 |
| 체벌의 필요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체 응답자 중 85.2%가 '필요하다'고 응답 - 적당한 체벌은 필요(14.6%), 교육차원(10.4%), 설명에 한계 존재(9.3%), 훈육에 효과(9.2%) 등 순 |